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개정('20.6.5.) 안내

안녕하십니까. FITI시험연구원 입니다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고시가 '20.6.5.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고시 전문은 [관련기관 홈페이지*](#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*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→법령/정책→고시/훈령/예고→고시 검색),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→행정규칙→고시 검색),
화학제품관리시스템(www.chemp.me.go.kr→알림마당→공지사항 54번)

◇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마련
- (대상 품목) 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, 공연용 포그액
 - (관리 내용) 고시된 안전·표시기준 적용(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준수)
 - (적용 시점) '21.1.1.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
- 나. 미세플라스틱(마이크로비즈)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
- (대상 품목) 세정제품(세정제, 제거제), 세탁제품(세탁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)
 - (관리 내용) '세정, 연마,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'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
 - (적용 시점) '21.1.1.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
- 다.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
- (대상 품목)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
 - (관리 내용)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」 적용(승인 절차 준수)
 - (적용 시점) '21.1.1.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

라.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제형 명확화로 함유금지물질(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) 공통 적용

- (대상 제형) 분사형 내 '필터형'을 명시하여,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분사형으로 분류
- (관리 내용)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(C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) 기준 공통 적용
- (적용 시점) '20.6.5.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

마. '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

- (대상 품목) 살균제, 살조제, 기피제, 목재용 보존제
- (관리 내용) 수은을 함유금지물질(검출허용한도 1 mg/kg)로 지정
- (적용 시점) '20.6.5.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

바.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

- (화학물질 안전기준) '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'에 대한 공통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 간의 범위 명확화
 - 비분사형 제품: 공통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 물질 모두 사용 가능 (단 물질이 중복될 경우, 품목별 안전기준 우선)
 - 분사형 제품: 품목별 안전기준 물질만 사용 가능
- (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) 'pH 기준' 분류를 필수 품목기준에서 물질 기준으로 변경
- (별표 8) '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' 마련
- (별지 제7, 8호 서식) '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변경 신청서(확인증 겸용)' 신설
- (별지 제 6, 9호 서식) '위해성평가' 및 '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' 신청서 마련

사. 기타 자구 수정 등

- 제거제, 표백제, 표,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
- 안전기준 물질명 이명 등 정리
- 연번 추가 등

중요 개정 내용 중 신규 지정된 ‘가·다’의 품목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*('다'의 경우에는 승인**)를 완료하여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, 그 외 개정 사항들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신고대상 품목 진행 절차: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,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(<https://chemp.me.go.kr>)로 제품정보 등 신고

** 승인대상 품목 진행 절차: 국립환경과학원(<https://chemp.me.go.kr>)에서 승인

관련 문의는 FITI시험연구원 (강다영 주임, ☎ 043-711-8863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, ☎1800-049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승인대상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